

서울특별시 금천구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

2024년 9월 4일
복지건설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4년 8월 22일, 금천구청장
- 나. 회부일자 : 2024년 8월 22일
- 다. 상정일자 : 제251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 중
제2차 복지건설위원회(2024년 9월 4일)
 - 상정,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·답변, 심사,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가. 제안이유

- 건설공사의 설계 및 시공 등의 적정성을 심의·자문하기 위하여 기술자문위원회의 구성·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건설공사의 품질을 높이고 안전을 확보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1) 목적(안 제1조)
- 2) 위원회 설치 및 기능(안 제2조)
- 3) 위원회 구성 및 해촉 등(안 제3조부터 제5조)
- 4) 위원장의 직무(안 제6조)
- 5) 심의·자문 요청 및 회의 등(안 제7조부터 제9조)
- 6) 소위원회 관련(안 제10조부터 제12조)
- 7) 의견 청취, 사후관리 및 수당(안 제13조부터 제15조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가. 검토보고 : 전문위원 추병수

나. 검토의견

1) 제정 이유

- 「건설기술 진흥법」 제6조에 따라 건설공사의 설계 및 시공 등의 적정성을 심의·자문하기 위하여 기술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임.

2) 주요 내용

가) 목적(안 제1조)

- 조례 제정의 목적과 관련 법령을 명시함

건설기술 진흥법

[시행 2024. 7. 10.] [법률 제19967호, 2024. 1. 9., 일부개정]

제6조(기술자문위원회) ① 건설공사의 설계 및 시공 등의 적정성에 관한 발주청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발주청에 기술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.
② 제1항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의 구성·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발주청이 정한다.

나) 위원회 설치 및 구성, 위원장의 직무(안 제2조~안 제6조)

- 안 제2조 : 위원회 설치 및 심의 사항을 규정함
- 안 제3조 : 구성(30명 이상 50명 이내),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규정
- 안 제6조 : 위원장의 직무를 규정함

다) 심의·자문 요청 및 회의 등(안 제7조부터 제9조)

- 위원회 회의소집 및 심의 또는 자문 결과의 처리기간, 통보결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

라) 소위원회 관련(안 제10조부터 제12조)

- 전문성과 효율성을 위해 소위원회의 설치를 규정하고 구성 및 회의소집, 심의 의결 사항을 규정함

마) 의견 청취, 사후관리 및 수당(안 제13조부터 제15조)

3) 검토 의견

- 본 조례안은 「건설기술 진흥법」 제6조에 따라 건설공사의 설계 및 시공 등의 적정성을 심의·자문하기 위해 상위 법령에 근거한 기술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의 범위에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- 향후 위원회가 형식적인 자문이나 심의 기구가 되지 않도록 건설공사 분야의 다양한 전문가를 위촉하고 위원회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임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생략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